

혼합기 청소작업 중 협착



1. 재해발생 경위

2005년 6월 ○일 18:21분경 경남 소재 ○○식품 제조 양념배합장에서 김치제조작업 종료후 양념혼합기 물청소 작업 중 배합봉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배합봉을 회전시키면서 물청소 작업 중 배합봉과 혼합기 본체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요인

- 가. 이물질 제거 등 청소작업방법 불량
- 나. 혼합기 방호장치 미설치
- 다.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3. 동종재해 예방대책

- 가. 청소·정비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혼합기 청소작업 시에는 반드시 운전을 정지하고, 오조작에 의한 불시 가동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함.



재해사례연구 협착사고

나. 덮개와 연동되는 방호장치 설치

혼합기 덮개와 연동되는 리미트스위치를 설치하여 덮개 개방시 회전날이 정지할 수 있도록 함.

다. 비상정지스위치 설치

혼합기 응급시 기계의 운전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정지스วิต치를 설치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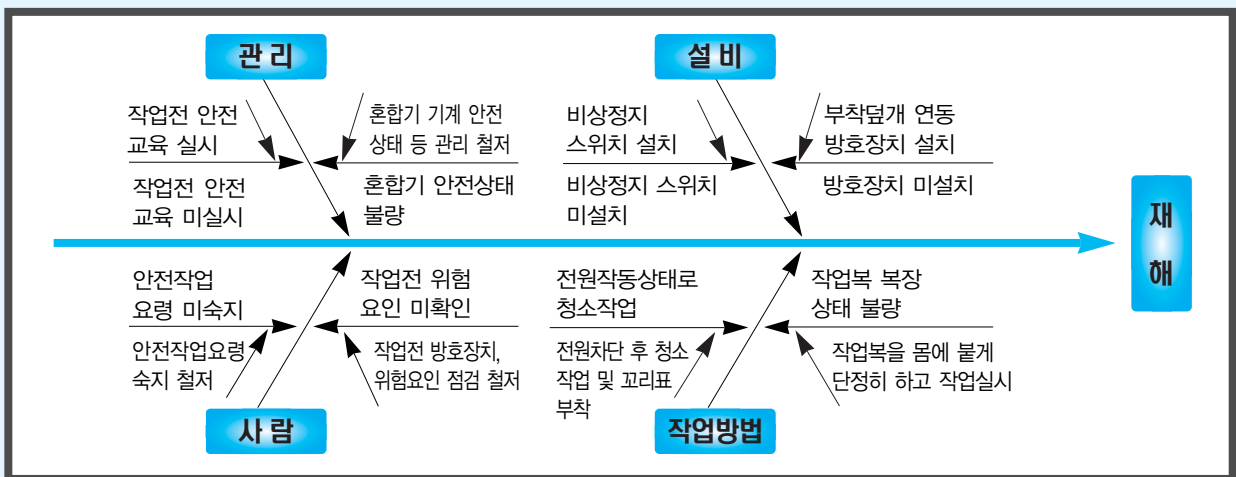
라. 작업복장을 단정히

혼합기 회전부에 작업복이 말려들어갈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복을 단정히 착용함.

4. 법 위반사항

-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 실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재해 요인도



배관 교체를 위한 용접작업 중 감전



1. 재해발생 경위

2005년 8월 ○일 11:20분경 부산시 소재 ○○건설(주) 노후 배수관 교체 공사현장에서 피재자가 공학관 지하 보일러실 상부에 위치한 급수배관의 연결을 위해 냉매 배관과 냉매 탱크 상부에서 용접 작업 중 전기적 쇼크에 의해 몸의 중심을 잃고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요인

- 가. 습윤한 장소에서의 용접 작업방법 불량
- 나. 용접 작업전 안전상태 점검 미흡
- 다.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3. 동종재해 예방대책

- 가. 습윤한 장소에서의 용접작업방법 준수

습윤한 장소에서 용접 작업을 할 경우에는 피부접촉저항이 현저히 저하되어 낮은 접촉 전압에도 전기적 쇼크에 의한 추락 등 2차 재해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용접장갑, 작업복 등 착용상태가 양호하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용접



재해사례연구
감전사고

봉 교체 시에는 신체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

나. 용접 작업전 용접기 작동이상 유무 확인

자동전격방지기가 내장된 인버터 용접기는 작업전 작동이상 유무를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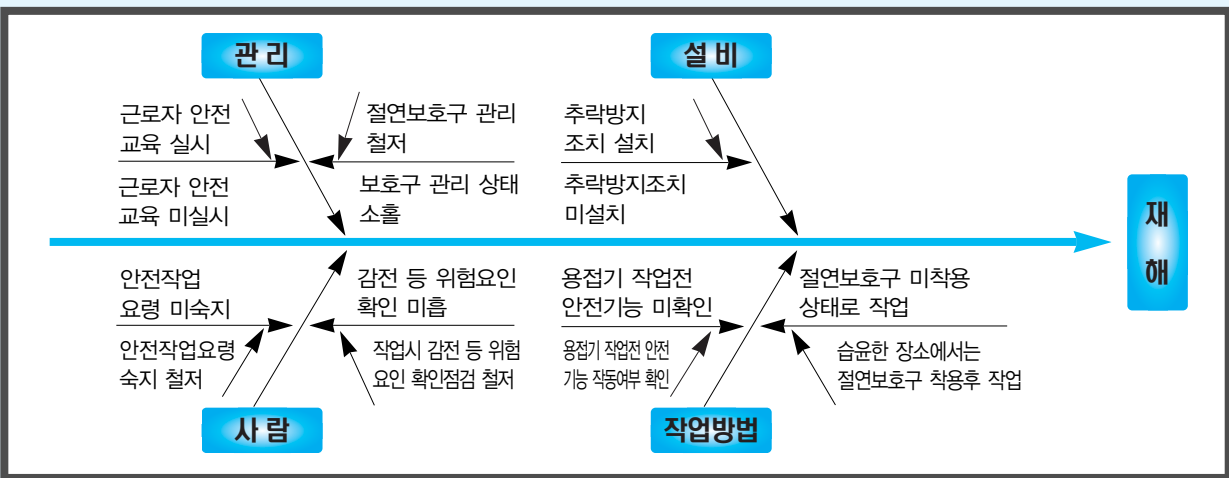
다. 추락방지조치 실시

높이 2m 이상 장소에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시에는 안전한 작업발판 등을 기존 배관에 설치·고정하고, 고정부가 미확보 되는 부분은 단관비계를 추가로 설치하여 지지·보강.

4. 법 위반사항

-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재해 요인도



손수레 원치로 양중작업 중 추락



1. 재해발생 경위

2005년 8월 ○일 14:58분경 서울시 소재 ○○건설 다가구 신축공사현장에서 피재자가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 미장 준비작업을 위해 옥탑층 바닥개구부에 원치를 설치한 뒤 지상 1층 엘리베이터 피트에서 원치에 소형 수레를 걸고 양중하려는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4.6m)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요인

- 가. 불안전상태에서 작업
- 나. 작업방법 불량
- 다. 추락방지조치 미 실시

3. 동종재해 예방대책

- 가. 안전한 공간 확보후 작업

추락 및 낙하의 우려가 없도록 건물 전면부 쪽의 여유있는 공간에 안전난간 등을 견고하게 설치한 상태에서 양중장치를 설치.



재해사레연구 추락사고

나. 작업방법 개선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 윈치를 설치하고 양중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고, 보조 기구 등을 이용하여 작업자가 서있는 피트 단부쪽으로 혹은 끌어당긴 뒤 소형 수레를 거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안전하게 작업.

다. 추락방지조치 철저

엘리베이터 피트 입구에 안전난간을 해체한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

4. 법 위반사항

-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 실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재해 요인도

